

『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7호
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서울시에서는 건축·공간환경 분야에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로 구분하여 행정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, 그 업무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해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가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-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도 통합에 따른 ‘마을건축가’ 용어를 삭제하고 마을건축가의 일부 업무를 공공건축

가의 업무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,
본 의원이 건축·공간환경분야의 민간전문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건축가를 공공건축가로 통합하는 것을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